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기준

[시행 2023. 8. 31.] [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 제2023-38호, 2023. 8. 31., 전부개정]

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(도시정책과), 044-200-3122

제1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「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제 60조제3항에 따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토지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) 「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(이하 "행복도시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(이하 "행복도시"라 한다)의 토지이용 및 관리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행복도시를 국토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미래형 모범도시로 건설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.
- **제3조(적용범위)** 이 기준은 행복도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복도시 예정지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며, 예정지역이 행복도시법 제15조에 따라 해제된 경우에는 「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」를 따른다.

제2장 도시기본계획

- 제4조(도시기본계획의 위상) ① 법 제2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(이하 "건설청장"이라 한다.)이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은 행복도시 건설 관련 계획과 관할구역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.
 - ② 도시기본계획은 행복도시법 제17조, 제19조, 제20조의 광역도시계획, 기본계획, 개발계획에 적합하게 수립되어야 한다.
- 제5조(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)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 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.
 - ② 건설청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있다.
 - ③ 법 제20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자문단(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위원회(이하 "도시계획위원회"라 한다)의 자문을 받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을 수 있다.

- 제6조(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) ① 건설청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,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 - ② 건설청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관보 또는 건설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.
 -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.
 - ④ 건설청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.
 - ⑤ 건설청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을 자문단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반영여부 및 검토 의견을 관보 또는 건설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.

제3장 도시관리계획

제1절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

- 제7조(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의 처리절차 등) ① 건설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경우에는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.
 - 1. 기초조사 내용의 적정성 여부
 - 2. 자연 및 생활환경의 훼손가능성 여부
 - 3.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・정비 및 개량에 관한 적정성 여부
 - 4.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의 적합성 여부
 - 5.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 여부
 - 6.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 - ② 건설청장은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미비한 제안에 대하여는 제안한 주민에게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 - ③ 건설청장은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하여 입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,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.
- 제8조(주민의견 청취) 건설청장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·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건설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.
- 제9조(재공고·열람사항) ① 법 제28조제4항에서 "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"이란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제8조를 준용한다.
- **제10조(도시관리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)** ①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는 50퍼센트 미만으로한다.

② 영 제25조제4항제1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 중 면적 산정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을 말한다.

제2절 용도지역 · 용도지구

- **제11조(특정용도제한지구의 세분)**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특정용도제한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숙박시설제한지구 : 특별히 숙박시설 제한이 필요한 지구
 - 2. 위락시설제한지구 : 특별히 위락시설 제한이 필요한 지구
 - 3.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: 특별히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한이 필요한 지구

제3절 도시계획시설

- **제12조(도시계획시설의 관리)**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행복도시내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지방재정법」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 조례에 의한다.
- 제13조(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)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,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「은행법」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으로 한다.

제4절 지구단위계획

- 제14조(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) 건설청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,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체계적·계획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지침으로 정할수 있다.
- 제15조(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)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존치기간은 3년으로 한다.

제4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

- 제16조(개발행위허가의 기준) ① 건설청장은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건설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.
 - 1. 녹지지역 내 입목(立木)의 축척 및 구성에 관하여는 「산지관리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- 2. 경사도가 17.5도 미만인 토지. 다만,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해당하는 공익시설과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사도를 17.5도 이상으

로 할 수 있다.

- ②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제17조(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) 건설청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·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1.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.
 - 2.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·석축·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,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.
 - 3.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「건축법 시행규칙」제25조를 준용한다.
 - 4.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5.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,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.
 - 6.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,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,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.
- 제18조(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) 건설청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.
 - 1. 소음・진동・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
 - 2.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
 - 3.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
 - 4. 공원·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·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
 - 5. 지방도 이상 도로 또는 철도변의 경계에서 가시권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(다만, 가시권이라도 경관훼손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.)
- 제19조(토지분할제한면적) 건설청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(1)(가)에서 조례로 정하는 분할제한면적은 200제곱 미터 이상으로 한다.
- 제20조(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)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・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
 - 2.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각통로 차폐,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
 - 3.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・수질・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- 4.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
- 5. 공원·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·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
- 제21조(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)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"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"라 함은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·지방공단·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.
- 제22조(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)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9조제5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, 위해의 방지, 환경오염의 방지,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, 신청서상 총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한다.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산정 시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,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계상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 - ③ 건설청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(이하 "허가를 받은 자"라 한다)가 착공 후 허가기간 내에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해 등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촉구를 하여야 한다
 - ④ 건설청장은 허가를 받은 자가 제3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예치된 이행보증금으로 공사중단 등에 따른 재해방지를 위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집행의 비용부담 절차 등에 관해서는 「행정대집행법」의 규정에 따른다.

제5장 용도지역 · 용도지구 안에서의 제한

- 제23조(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) ① 영 별표 2부터 별표 17까지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・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(이하 "건축제한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: 별표 1과 같다.
 - 2.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: 별표 2와 같다.
 - 3.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: 별표 3과 같다.
 - 4.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: 별표 4와 같다.
 - 5.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: 별표 5와 같다.
 - 6.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: 별표 6과 같다.
 - 7.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: 별표 7과 같다.
 - 8.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: 별표 8과 같다.
 - 9.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: 별표 9와 같다.
 - 10.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: 별표 10과 같다.
 - 11.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: 별표 11과 같다.

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2.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: 별표 12와 같다.
- 13.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: 별표 13과 같다.
- 14.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: 별표 14와 같다.
- 15.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: 별표 15와 같다.
- 16.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: 별표 16과 같다.
- ② 영 제71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·보전녹지지역·생산녹지지역·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4층 이하로 한다.
- 제24조(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)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. 다만, 관계 법령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바에 따른다.
 - 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
 - 2. 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, 안마시술소, 단란주점
 - 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
 - 4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
 - 5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5호가목의 일반숙박시설
 - 6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
 - 7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7호의 공장
 - 8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
 - 9. 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・저장 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, 위험물제조소,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·저장시설
 - 10. 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(주차장은 제외한다)
 - 11.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(양잠・양봉・양어시설은 제외)・가축시설・도축장 및 도계장
 - 1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
 - 1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
- 제25조(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)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. 다만, 관계 법령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바에 따른다.
 - 1. 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, 안마시술소
 - 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
 - 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
 - 4. 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 1 제15호가목의 일반숙박시설
 - 5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

- 6. 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 1 제17호의 공장
- 7. 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
- 8. 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・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, 위험물제조소,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・저장시설
- 9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(주차장은 제외한다)
- 10.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・가축시설・도축장 및 도계장
- 1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
- 12. 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
- 제26조(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) 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. 다만, 관계 법령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- 1. 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
 - 2. 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
 - 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
 - 4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
 - 5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7호의 공장
 - 6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
 - 7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(주유소는 제외한다)
 - 8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(주차장은 제외한다)
 - 9.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
 - 10. 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
 - 1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중 가목과 나목의 시설
 - 1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·제5호·제6호·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시가지경관지구안의 도로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시가지경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.
 - ③ 시가지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·창고시설·자동차관련시설 등은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.
 - ④ 토지의 일부가 시가지경관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 전체 토지가 시가지경관지구안에 있는 것으로 본다.
- 제27조(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)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. 다만,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 범위 내에서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.

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

- 제28조(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)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·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의 경우 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다.
 - 1. 자연경관지구: 5층 이하로서 20미터 이하(주거지역, 상업지역,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이하로서 12미터 이하로 한다)
 - 2. 특화경관지구 : 5층 이하로서 20미터 이하(주거지역, 상업지역,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이하로 서 12미터 이하로 한다)
 - 3. 시가지경관지구: 5층 이상
- 제29조(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)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,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 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다
- **제30조(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)**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,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. 다만,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한다.
- **제31조(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)** ① 영 제72조제2항,「건축법」제46조제2항 및「건축법 시행령」제 31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선 후퇴 공간에는 개방감 확보, 출입의 용이 및 경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·담장·계단·주차장·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1. 허가권자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, 돌의자 등을 설치하는 경우
 - 2. 조경식수를 하는 경우
 - 3.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경우
- 제32조(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)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건설청장은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경관보전·관리·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·담장·대문의 양식·구조·형태·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.
- 제33조(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)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 조대·장독대·철조망 등 도시경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.
 - ②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굴뚝·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.
- **제34조(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)** 영 제76조제1항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.

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(공관은 제외한다)
- 2. 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
- 3.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및 나목(회의장・공회당은 제외한다)
- 4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
- 5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(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)
- 6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
- 7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
- 8. 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
- 9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
- 10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(주유소는 제외한다)
- 11. 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(주차장과 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은 제외한다)
- 12.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・가축시설・도축장 및 도계장
- 1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
- 14. 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중 가목과 나목의 시설
- 15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
- 제35조(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)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. 다만,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 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.
 - 1. 영 별표 24에 해당하는 건축물
 - 2.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(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)
- **제36조(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)**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.
 - 1. 제17조제1호의 숙박시설제한지구 : 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
 - 2. 제17조제2호의 위락시설제한지구: 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
 - 3. 제17조제3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: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
- 제37조(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)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지구단 위계획을 따른다.
 - 1. 방재지구
 - 2. 보호지구
- 제38조(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)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지구단위계획구역인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영 제84조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지구 단위계획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.

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. 제1종전용주거지역: 50퍼센트 이하
- 2. 제2종전용주거지역: 50퍼센트 이하
- 3. 제1종일반주거지역: 60퍼센트 이하
- 4. 제2종일반주거지역: 60퍼센트 이하
- 5. 제3종일반주거지역: 50퍼센트 이하
- 6. 준주거지역: 70퍼센트 이하
- 7. 중심상업지역: 80퍼센트 이하
- 8. 일반상업지역: 80퍼센트 이하
- 9. 근린상업지역: 70퍼센트 이하
- 10. 유통상업지역: 80퍼센트 이하
- 11. 전용공업지역 : 70퍼센트 이하
- 12. 일반공업지역 : 70퍼센트 이하
- 13. 준공업지역 : 70퍼센트 이하
- 14. 보전녹지지역: 20퍼센트 이하
- 15. 생산녹지지역: 20퍼센트 이하
- 16. 자연녹지지역: 20퍼센트 이하
- 제39조(기타 용도지구 등의 건폐율)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등의 건 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: 30퍼센트 이하
 - 2. 「자연공원법」에 의한 자연공원: 60퍼센트 이하
 - 3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: 60퍼센트 이하
 - 4. 공업지역에 있는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
 - ・일반산업단지・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: 80퍼센트 이하
- **제40조(건폐율의 강화)**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.
- 제41조(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)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 · 일반상업지역 · 근린상업지역 · 전용공업지역 · 일반공업지역 · 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.

제42조(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)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제1종전용주거지역: 80퍼센트 이하

2. 제2종전용주거지역: 120퍼센트 이하

3. 제1종일반주거지역: 150퍼센트 이하

- 4. 제2종일반주거지역: 200퍼센트 이하
- 5. 제3종일반주거지역: 250퍼센트 이하
- 6. 준주거지역: 300퍼센트 이하
- 7. 중심상업지역: 600퍼센트 이하
- 8. 일반상업지역: 550퍼센트 이하
- 9. 근린상업지역: 500퍼센트 이하
- 10. 유통상업지역: 500퍼센트 이하
- 11. 전용공업지역: 250퍼센트 이하
- 12. 일반공업지역: 300퍼센트 이하
- 13. 준공업지역: 300퍼센트 이하
- 14. 보전녹지지역: 80퍼센트 이하
- 15. 생산녹지지역: 80퍼센트 이하
- 16. 자연녹지지역: 80퍼센트 이하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적률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.
- **제43조(기타 용도지구 등의 용적률)** 영 제85조제6항제3호에 따라「자연공원법」에 의한 자연공원 안에서의 용적률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.
- 제44조(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)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 · 중심상업지역 · 일반상 업지역 · 근린상업지역 · 전용공업지역 · 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교통 · 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05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.
- 제45조(공지의 설치·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)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·광장·도로·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·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다음 산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적용할 수 있다.
 -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 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= $[(1+0.3\alpha)/(1-\alpha)]$ x(제4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)
- *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
 - 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6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절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

제46조(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) 행복도시법 제60조 및 법 제113조에 따라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.

제47조(기능)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법, 다른 법령 또는 이 기준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
- 2.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
- 3. 건설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
- 4.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건설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

제48조(구성) ①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청 도시계획국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③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건설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- 1. 추진위윈회 위원
- 2. 소속 공무원
- 3.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공무원
- 4. 토지이용・교통・환경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
-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49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0조(회의운영) ①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.

- ②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

제51조(분과위원회)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- 1. 제1분과위원회 :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, 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·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· 변경결정에 대한 자문
- 2. 제2분과위원회 :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
- 3. 제3분과위원회 :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
- ② 분과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.
-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.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52조(간사 및 서기) ① 도시계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.
 - ② 간사 및 서기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 담당자가 된다.
 -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,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.
- 제53조(자료제출 및 설명요청) ① 도시계획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제54조(회의의 비공개 등) 도시계획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,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55조(회의록)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,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.
- 제56조(수당 및 여비) 법 제115조에 따라 건설청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7장 보 칙

제57조(과태료의 부과) 영 제134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

제58조(재검토기한) 건설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・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

부칙 <제2023-38호,2023.8.31.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인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,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.

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